



제432회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학교 선거교육 실시〉

■ 채현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5660호)

2026. 2.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조 문 상

목 차

I . 개 요	1
1. 제안경위	1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 . 검토의견	2
1. 개정안의 주요내용	2
2. 검토의견	3

I. 개 요

1.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채현일의원 등 10인
2. 발의연월일 : 2025. 12. 29.
3. 회부연월일 : 2025. 12. 30.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2020년 1월 개정을 통하여 선거권의 연령 기준을 19세에서 18세로 하향하였는데, 이에 따라 학교에서 선거 관련 교육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발생함.

학생들이 민주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고 주권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학교에서 선거 교육이 필요하나, 현행법에는 그 근거가 없어 교육 현장에서 선거 교육의 실행 가능 여부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하여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그 소속 학생에게 선거에 관련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헌법정신 함양과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0조의4 신설).

Ⅱ. 검토의견

1.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그 소속 학생에게 선거와 관련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 4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u>제10조의4(선거교육) ①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는 그 소속 학생에게 선거와 관련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u> <u>② 교사 등 교직원은 제1항에 따른 교육 중에 학생을 대상으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발언을 하는 등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u>

2. 검토의견

선거권은 대의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선거행위를 할 수 있는 국민에게 부여하는 헌법상의 권리로 우리 헌법은 선거연령을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¹⁾

선거권자는 국가의사결정의 의미와 국가의사를 결정할 국민대표자를 선택하고 그 적합 여부에 대하여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현행법은 2020년 1월 개정을 통하여 선거권이 부여되는 연령이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된 바 있으며,²⁾ 이에 따라 선거권이 부여되는 학생의 수가 확대되었음.

선거권 행사를 위해서는 국가의사결정의 의미와 국가의사를 결정할 국민대표자를 선택하고 그 적합 여부에 대하여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되는데, 「초·중등교육법」 상 학생의 경우 대부분 사회경험이 부족하고 선거에도 처음 참여하게 되므로 선거권 행사에 요구되는 지식이 불충분하다 할 수 있음.

1) 「대한민국 헌법」 제24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2) 「공직선거법」

제15조(선거권) ① 18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다. 다만, 지역구 국회의원의 선거권은 18세 이상의 국민으로서 제37조제1항에 따른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하여 인정된다.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국회의원지역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주민등록표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올라 있고 해당 국회의원지역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② 18세 이상으로서 제37조제1항에 따른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구역에서 선거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권이 있다.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주민등록표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올라 있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연수원)에서는 홈페이지에서 민주시민교육³⁾의 일환으로 일반유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콘텐츠 외에 청소년 선거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으나, 보다 적극적으로 학생들의 선거 교육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2025년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민주시민교육 목록》

No	자료유형	제목
1	동영상	새내기유권자선거교육영상[대한민국유권자가되다(2025)]
2	PPT, 텍스트, 기타	[선거교육기본교재]제21대대통령선거바로알기(새내기유권자)
3	텍스트	[선거교육기본교재]제21대대통령선거정치관계법사례예시
4	동영상	[선거교육영상자료]제21대대통령선거유권자가되다
5	책자	[선거교육교재책자]대한민국유권자가되다(2025)
6	기타	[선거교육카드뉴스]학생유권자의선거운동
7	동영상	[후보자바로알기]제21대대통령선거선거교육영상:우리도 유권자!
8	동영상	[학생의선거운동2]제21대대통령선거선거교육영상:우리도 유권자!
9	동영상	[학생의선거운동1]제21대대통령선거선거교육영상:우리도 유권자!
10	동영상	[선거일과선거권]제21대대통령선거선거교육영상:우리도 유권자!
11	동영상	[제21대대통령선거]새내기유권자선거교육동영상:우리도 유권자!
12	기타	[선거교육카드뉴스]선거인명부알아보기
13	기타	[선거교육카드뉴스]5월10일은유권자의날
14	기타	[선거교육카드뉴스]후보자공약
15	동영상	[한국수어]제21대대통령선거새내기유권자선거교육동영상(합본)
16	기타	[선거교육카드뉴스]사전투표
17	기타	[선거교육카드뉴스]선거일투표
18	기타	[선거교육카드뉴스]개표
19	책자, PPT	[새내기유권자선거교육]헌법과선거이야기강의교재
20	책자, 리플릿, PPT	[미래유권자]헌법과선거이야기강의안+교사학습가이드(중학생)
21	책자, PPT, 기타	선거·정치미디어리터러시교육콘텐츠
22	동영상	[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우리도유권자!:선거일과선거일(선거일과 선거권 연령)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https://www.civicedu.go.kr/web/civilEdu/newCivilEdu_01_03.jsp?pBoardTypeCd=00051&boardType=1&depth=5)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은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민주시민교육은 선거·정당, 일반유권자, 청소년 선거교육, 기타로 분류되어 있음.

이에 개정안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그 소속 학생에게 선거와 관련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으로, 선거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선거 관련 지식을 제공함으로써 민주주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취지에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

다만, 개정안에 따른 선거교육이 학교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교육 실시 주체의 적정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개정안은 제10조의4제2항에서 교사 등 교직원은 선거교육 중에 학생을 대상으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발언을 하는 등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학교 교사에 의한 선거교육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선거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중립성이나 선거교육의 전문성 확보가 가능한지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임.

현재 선거 및 선거교육을 주관하고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학교에서의 선거교육을 주관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봄.

따라서, 개정안에 대해서는 초·중·고등학생에 대한 선거교육의 필요성과 함께 정치적·사회적 판단 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학생들에게 미칠 영향,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초·중·고등학생 등에 대한 선거교육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아직 사회적·정치적으로 미성숙한 학생들에게 미칠 영향, 교원의 정치의식 및 직업윤리의 정도, 국민적 공감대 등을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음.

문 의 처
02)6788-5342